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직 내부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직위에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사람에 대한 고용 안정성 보장 필요

3.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의 임기 연장

- 1) 공직 내부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직위에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사람에 대한 고용안정성 보장 필요
- 2) 성과가 탁월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5년이 초과한 후에도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3) 성과가 탁월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기가 연장됨으로써, 공직 전문성 강화 및 공무원의 고용안정성 증대

나. 선발시험의 절차 개선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복수 추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응시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재공고를 반복하는 운영상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단수 추천도 가능하도록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시자가 1명 밖에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 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① ----- ----- ----- -----. <u>다만, 응시자가 1명 밖에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1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 하여 통보할 수 있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① (생 략)	제9조(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임용된 사 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 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 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② ----- ----- ----- ----- ----- ----- ----- -----. <u>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 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 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u>

	<u>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2